
2020년도 상반기 경전철 하부 방치자전거 정비계획(안)



안전교통건설국
도시철도과

- 2020년도 상반기 -

경전철 하부 방치자전거 정비계획(안)

의정부경전철 역사 및 외부출입구 하부 자전거보관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 정비를 통하여 경전철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경전철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8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 ▶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공고 및 열람

II 처리 현황

□ 지난해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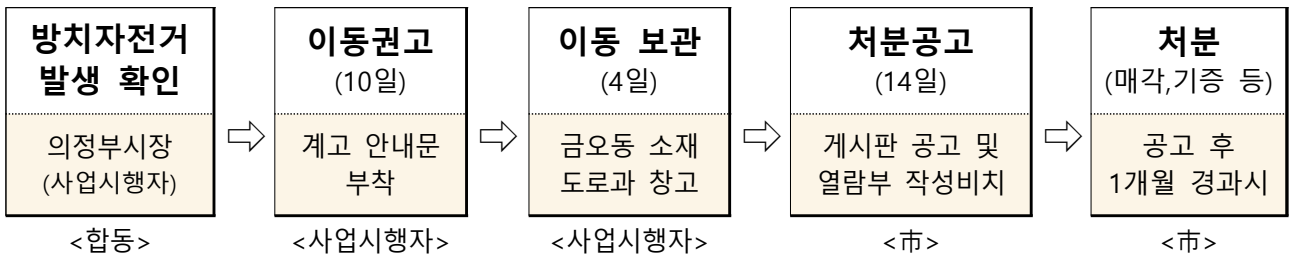
- '19. 10. 1. ~ 10. 20. : 무단방치 자전거 1·2차 계고
- '19. 10. 21. ~ 10. 24. : 수거 및 이동 보관 (60대)
- '19. 10. 25. ~ 11. 7. : 처분 공고 (14일간)
- '19. 3. : 방치자전거 무상기증 (市 → 비영리단체)

Ⅲ 추진 계획

□ 개요

- 기 간 : 2020. 4. 22. ~ 2020. 5. 21. (30일간)
- 장 소 : 역사 하부 자전거 보관대 총 119개소(628대 수용)
 - * [붙임 1]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이용 현황
- 대 상 :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장기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
 - 선별기준 : ① 타이어 펑크, 체인 고착 ② 안장, 바퀴 이탈
 - ③ 그 밖에 심각한 파손이 있는 방치 자전거
- 처분방법 : **최소 1개월** 보관 후 처분(매각, 기증 등)
 - 관리부서(도로과)와 협조하여 처분 예정

□ 절차



□ 업무범위

구 분	업무 주관	비 고
계고장(안내문) 부착	사업시행자	관리운영사 지원
이동 보관	사업시행자	관리운영사 지원
처분 공고	市	
열람부 작성	市	사업시행자 지원
처분(매각, 기증 등)	市	

※ 정비인원 : 총 6명 (市 1명, 사업시행자 1명, 관리운영사 4명)

□ 세부일정

- 계고장(안내문) 부착[10일간]
 - '20. 4. 22. ~ 5. 1.
 - * [붙임 2] 계고장(안내문) 및 현수막 (안)
- 자전거 수거 및 이동 보관[4일간]
 - 사업시행자 시행 : '20. 5. 4. ~ 5. 7.
 - * 임시 보관장소 : 금오적치장(호자 환승주차장 옆)
- 처분 공고[공고기간 14일]
 - 공고 및 열람(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20. 5. 8. ~ 5. 21.
 -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등
- 공고기간 이후 자전거 처리[매각 등]
 - 1개월 이상 보관 후 관리부서(도로과) 협조 하에 매각, 기증 등 처분
 - * '19년 처리실적 : 방치자전거 59대 처분(기증)

IV 향후 계획

□ 무단방치 자전거 주변 상시적 환경 정비

- 민원 발생 시 수시 정비로 민원 해소 및 도시 미관 향상

□ 역사 및 교량 하부 공간을 이용한 자전거보관대 신설 검토

- 역사별 자전거보관대 이용현황에 따라 추가설치 검토

붙임1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이용 현황

(’20. 4. 1. 조사기준)

연번	위 치	설치현황		이용 댓수현황(대)			비 고
		개소수	보관댓수(대)	현 적치량	여유량	부족량	
합 계		119	628	507	157	36	
1	발곡역	16	80	52	28	-	
2	회룡역	26	135	107	28	-	
3	범골역	4	20	26	-	6	
4	의정부역	3	15	24	-	9	
5	의정부 시청역	5	25	13	12	-	
6	흥선역	11	75	57	18	-	
7	중앙역	3	20	35	-	15	
8	동오역	11	55	50	5	-	
9	새말역	5	25	31	-	6	
10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7	33	30	3	-	
11	효자역	4	20	11	9	-	
12	곤제역	7	35	15	20	-	
13	어룡역	4	20	14	6	-	
14	송산역	7	40	20	20	-	
15	탑석역	6	30	22	8	-	

계고장(안내문) (안)



울산광역시
북구청의가치를높이겠습니다

No. _____

방치자전거 자진이전 계고(안내문)

방치자전거 소유자 귀하

귀하의 자전거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시설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자전거 방치	해당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품파손 :	()
	부품이탈 :	()
	체인 및 기어 고착	()
	타이어 펑크 및 바람 빠짐	()
	자전거 주차구역 이외 주차	()

- 확인일자 : 201 년 월 일
- 확인장소 :

귀하께서 201 까지 자전거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문의처] 의정부경량전철(주)(☎031-820-XXXX)

현수막 (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 처분 예고

방치 자전거는 20 까지 자진 이동바라며, 이후 강제 이동 및 처분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장[의정부경량전철(주) 031-820-XXXX]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8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이동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시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 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 대금을 시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자전거를 시민에게 기증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전거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